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폐지조례 (안)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(조례
제1213호, 1982. 8. 6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미회수 상환금에 대한 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융자된 미회수 상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회수하되, '96년도 회수액은 일반재원화 하고 '97년 이후 회수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입하여 활용한다.